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홍보전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4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되었고,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항 삭제
-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
- 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용어·변경된 지능정보화 와 관련한 용어·표현을 재정비하고 상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한 규정과 사문화되서 실효성이 적은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 마. 인터넷매체활용(뉴스레터, 인터넷방송, sns)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능정보화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의 성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할 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평가대상 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조정·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요원”이란 구에서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

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정보화전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

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3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다른 기관과 상호연동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이미 정보화된 업무와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

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시스템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5장 정보화자료 관리

제25조(지능정보화자료 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교육

제28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정

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정보화 전문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등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대학, 교육기관, 전문업체 등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분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에서 유·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31조(구민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또는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어르신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 다양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교육시설·장비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제33조(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③ 교육 시작 후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

1. 총 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총 교육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④ 수강료 환불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정보화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교재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34조(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며 필요 시 개편을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창구 운영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정보 담당부서명 및 담당직원을 명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

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할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
2.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3.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4.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혐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

제3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8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 기념품·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전자학습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의 성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별표 1]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제33조 관련)

단 위	교 육 시 간	수 강 료
1인 1강좌	10시간 ~ 20시간	20,000원 이하
	21시간 ~ 30시간	30,000원 이하
	31시간 ~ 60시간	40,000원 이하

※ 컴퓨터 기초반은 제33조 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여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연 1회에 한하여 1강좌 무료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법규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부분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홍보전산과장 유 미 조